

영등포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17. 9. 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65호로 2017년 8월 29일 김재진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보도”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제설·제빙에 관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순위를 정함(안 제3조)

다.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 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정함(안 제5조)
- 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을 정함(안 제6조)
- 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도구의 비치·관리 및  
자재나 도구의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7. 27. ~ 8. 4.)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 등의 제설·제빙에 관한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3조에서 건축물 내 거주 및 시설의 유형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제설·제빙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의 완료 시기를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였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 관리 하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겨울철 구민의 안전 확보와 도로의 소통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등에 별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과 홍보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본조신설 2015.11.30.]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별표 1 제17호

#### 17.공장

물품의 제고·가공 [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 1 제5호

####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